

## 세법학 1부

【문제 1】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 <사례 1>

A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甲은 2016년 7월 6일 A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 부분조사’로, 조사대상기간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사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을 한 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甲은 2017년 3월 21일 다시 A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세 통합조사’로, 조사대상기간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세무조사결정처분을 하고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차 세무조사에서는 1차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범위였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사례 2>

거주자 乙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가액 합계가 23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乙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丙은 2014년 9월 경 乙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B지방국세청은 乙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대한 정기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丙이 乙에게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데 오류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 양도인을 상대로 질문·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한 후, 乙이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丙에 대하여 乙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하였고, 丙은 2017년 2월 10일 乙에게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물음 1]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금지 원칙의 의의를 설명하고,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중 4가지를 기술하시오. (단,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는 기술하지 마시오.) (6점)

[물음 2] <사례 1>에서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사례 2>에서 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중 하나인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2017년 세무사 2차 세법학1부 5-1 [3교시]

【문제 2】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甲, 乙, 丙, 丁(모두 거주자임)이 공동사업자인 A기업은 2014년 7월 1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甲과 乙은 부부이고, 丙과 丁은 甲과 乙의 자녀이다. 사업장의 건물과 토지는 甲과 乙의 공동명의(지분율 50:50)로 되어 있으나, 乙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료를 전혀 수령하지 않고 있다. 乙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일하고 있는 반면, 丙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丁은 대학생으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수업이 없는 날 가끔씩 사업장에 들러 정리업무를 보고 있다. 甲, 乙, 丁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으나, 丙은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당시 세무서에 신고된 공동사업자들의 손익분배비율과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 丙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의 손익분배비율 및 출자비율은 사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출자비율
甲(부)	30%	45%
乙(모)	20%	20%
丙(자)	25%	25%
丁(자)	25%	10%
합계	100%	100%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2016년의 사업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모든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후의 금액이다.)

총수입금액 10,000,000,000원  
 필요경비 6,000,000,000원  
 사업소득금액 4,000,000,000원

[물음 1] 「소득세법」상 공동사업합산과세제도에 있어 과세요건,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된 공동사업자 및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위 사례에서 甲, 丙, 丁의 2016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이 계산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물음 3] 위 사례에서 乙의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4] 위 사례와 관련하여 향후 甲과 乙의 입장에서 고려 가능한 절세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2017년 세무사 2차 세법학1부 5-2 [3교시]

**【문제 3】** 법인의 분식결산은 법인의 이익과 재산을 과대계상할 목적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유형과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면서 이를 숨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유형 등이 있다.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1>**

주식회사 A는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실시된 회계감사 결과 분식결산 사실이 발견되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실지조사 등을 통한 재무제표 감리를 받았다. 그 결과, 2014사업연도에 비용 375억 원을, 2015사업연도에 비용 285억 원을, 2013사업연도까지의 누적된 비용 1,336억 원을 각각 과소계상하여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996억 원의 비용이 과소계상되었음이 밝혀졌다. 이후 A의 대표이사 등 분식결산 관련자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과세관청은 A의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2013, 2014, 2015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액경정처분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A는 스스로 장부가 조작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조작된 부분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과세관청에 의해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과세관청은 A가 분식결산이 적발되자 비로소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례 2>**

주식회사 B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은 2013년 7월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2013년 8월과 9월 B로 하여금 회사 자금 각 5,000만 달러를 송금하게 한 후, 다시 역외펀드로 하여금 그 중 8,000만 달러를 바하마에 있는 제3자의 개인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甲이 B의 자금 8,0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 727억 원(8,000만 달러의 원화환산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甲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7년 6월 9일 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甲과 그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B의 지분은 45%였으며, 나머지 지분은 B의 임직원들과 계열회사 등에 분산되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횡령이 있는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 甲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그 후 B는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B는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취했으므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물음 1】** <사례 1>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A에게 신의성실의무를 적용하여 분식결산으로 과소계상된 비용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8점)

[물음 2] [물음 1]과는 별개로, <사례 1>과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3에서는 분식결산으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을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의의와 적용요건 및 구체적인 환급제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시오.) (12점)

[물음 3] <사례 2>와 관련하여, 甲의 횡령행위를 상여로 사외유출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례의 기본적인 입장을 기술한 후 대법원에서 제시한 사외유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4】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 <사례 1>

법률혼 관계에 있던 남편 甲과 아내 乙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2017년 7월 1일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甲이 乙에게 위자료로 시가 5억 원 상당의 상가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을 각각 이전하였다. (단, 甲과 乙은 모두 거주자이고, 상가와 아파트는 모두 국내에 있는 재산이며, 위자료의 지급과 재산분할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고려하지 마시오.)

### <사례 2>

丙은 1987년 7월 1일 丁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989년 8월 1일 자녀 戊를 낳았고, 2017년 2월 1일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까지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丙의 상속재산에는 20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시가 20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었는데, 丁과 戊는 상속재산을 50:50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丁은 2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단, 丙, 丁 및 戊는 모두 거주자이고, 예금채권과 주택 모두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가정한다.)

[물음 1] <사례 1>에서 상가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물음 2] <사례 1>에서 상가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2017년 세무사 2차 세법학1부 5-4 [3교시]

[물음 3] <사례 1>에서 甲이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에 따라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상가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물음 4] <사례 2>에서 丁이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의 세목을 기술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청렴은 건전한 국가재정의 첫걸음